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9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김상훈 · 이현승 · 권영진
고동진 · 신동욱 · 이달희
박충권 · 강대식 · 김재섭
이만희 · 안철수 · 최보운
김선교 · 유용원 · 김장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써 적극적인 범죤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죤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계정”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제2장에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지급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불법재산이 송금·이체·이전된 계좌등
 2. 제1호의 계좌등으로부터 불법재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
-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정

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의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등의 명의인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등에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불법재산과 관계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좌등이 불법재산의 수수, 은닉 등에 사용된 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제2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5조의5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계정”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 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 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의5(지급정지) ① 금융정보 분석원장은 계좌 또는 계정(이 하 “계좌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 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 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불법재산이 송금·이체·이 전된 계좌등

2. 제1호의 계좌등으로부터 불법재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등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의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등의 명의인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등에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불법재산과 관계된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

	<u>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u> 2. <u>해당 계좌등이 불법재산의</u> <u>수수, 은닉 등에 사용된 계좌</u> <u>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u> <u>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u> <u>우</u> 3. <u>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u> <u>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u> <u>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u> <u>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u> <u>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u> <u>우</u> 4. <u>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u> <u>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⑧ <u>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u> <u>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u> <u>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7조(벌칙) ① · ② (생략)	제17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 설></u> 3.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 설></u> ③ (생략)	3. 제5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u>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u> 제20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조의5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u>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3. 4.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u>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